

제287회
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 자 료



2019. 6. 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 경 부위원장님,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, 지금부터 『서울 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2019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특수학교 1개교(사립 특수학교의 공립전환), 단설유치원 4개원(매입형유치원), 병설유치원 2개원을 신설하고,
- 유치원 1개원의 한시적 위치이전을 반영하며,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 학교 3개교의 도로명주소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
-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·경영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 「교육기본법」 제11조와
- 교육감의 교육·학예에 관한 관장 사무로 “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”을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입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○ 사립 특수학교인 인강학교를 공립 서울도솔학교로 전환하고,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하여 병설유치원 2개원 및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립유치원 4개원을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.

○ 서울상도유치원의 위치 이전은

서울상도유치원 일부 붕괴 사고에 따른 것으로

2019년 3월 폐원한 인근 사립 동아유치원을

3년간 임차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

한시적 위치 이전을 반영하는 것이며,

○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학교 3개교의 위치 정비는

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던 신설 학교(항동유·항동초)의

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,

건물군 분리 신청에 따른 도로명 주소 변경(길음중)을

반영하여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